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규정

2022 .03. 23.

주식회사 현대퓨처넷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경영에 전문성을 지닌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최고경영자의 교체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경영 공백 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최고경영자라 함은 회사 업무에 대하여 최종 의사 결정권한을 가진 자이며,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또한 법령과 정관에 별도의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최고경영자로 복수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 조(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는 임기만료, 사임, 해임, 유고 등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 4 조(경영승계절차 개시 유형)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개시 유형은 아래 3 가지와 같다.

- ① 재선임 시
- ② 신규 선임 시
- ③ 비상 상황 시 (해임, 사임, 유고 등)

제 5 조(경영승계절차 개시 유형별 개시 시기)

- ① 재선임 시 경영승계절차는 임기만료일 90 일 이전부터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개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신규 선임 시 경영승계절차는 기존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일 90 일 이전부터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개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해임, 사임, 유고 등의 비상 상황 시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1 주일 이내에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후보를 추천한다.

제 6 조(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및 경영승계 지원부서의 구성 및 역할)

- ①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및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다.

②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사내 임원 인사담당 부서들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검증 업무
-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제 7 조(최고경영자 후보 요건)

- ① 최고경영자 후보는 기업집단 현대백화점의 지배구조 현장, 윤리현장, 그룹 윤리강령, 임직원 윤리실천경영지침을 준수하는 임원으로 한다.
- ② 최고경영자 후보는 계열회사 또는 관련 업계에서 최소 임원 (미등기 포함) 이상의 직급을 수행한 자여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 후보는 계열회사 또는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10 년을 초과한 자로서,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자로 한다.
- ④ 최고경영자 후보는 회사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전략과 비전,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제 8 조(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회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및 잠재적 후보군인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원부서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 ① 임원선임 (승진평가) : 사내 윤리규정, 인사평가 결과 등에 입각하여 전문성 있는 임원을 선임하고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은 방지
- ② 맞춤형 교육: 리더십 향상, 전략 수립, 조직역량 향상, 성과관리 방안, 전략적 의사결정 등 교육 프로그램 설계
- ③ 임원 평가 : 경영실적, 조직문화 등 종합적인 임원 평가
- ④ 그 밖의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후보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일체

제 9 조(경영승계절차)

① 재선임 시

- 1)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기 만료 90 일 이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와 지원부서의 검증을 통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 2) 회사는 재선임으로 추천된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통보하며,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결의한다.
- 3)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로 재선임된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이사회를 통해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최고경영자 직을 수행한다.

② 신규 선임 시

- 1)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기 만료 90 일 이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와 지원부서의 검증을 통하여 관리중인 후보군 중에서 신임 최고경영자후보를 결정한다.
- 2) 회사는 신규로 추천된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통보하며,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결의한다. 다만, 후보가 이미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안건 부의 절차는 생략한다. 또한 기존 최고경영자는 신임 최고경영자 후보자에게 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인수인계 한다.
- 3)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로 신규 선임된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이사회를 통해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최고경영자 직을 수행한다.

③ 비상 상황 시

- 1) 회사는 최고경영자 직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해임, 사임, 유고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1 주일 이내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 중에서 신임 최고경영자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
- 2) 회사는 신규로 추천된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결의한다.
- 3)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로 신규 선임된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이사회를 통해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최고경영자 직을 수행한다.
- 4) 비상 상황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직무 대행 지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복수의 최고 경영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공백이 발생한 최고경영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또다른 최고경영자가 대리하여 모든 최고경영자 직무를 수행한다.
 - 나. 모든 최고경영자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사내이사 중 선임 이사가 공백이 발생한 최고경영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최고경영자를 대리하여 모든 최고경영자 직무를 수행한다.
 - 다. 모든 최고경영자 및 사내이사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미등기 임원 중 가장 상위 직급의 임원이 공백이 발생한 최고경영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최고경영자를 대리하여 모든 최고경영자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